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추가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9084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재원 추가	2

I. 제안경위

2025년 3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Ⅲ. 검토의견

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자원 추가

개정안은 시·군 또는 자치구에 설치할 수 있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③ ~ ⑥ (생략)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7. (현행과 같음) 8. <u>그 밖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u> ③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하수법」 제30조의21)에 따라 시·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

1) 「지하수법」 제30조의2(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자치구는 관할구역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특별회계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등으로 구성하며,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조사,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별로 지하수 조례를 제정²⁾하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보조금
2.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6.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
7.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

③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현금인 경우에는 특별회계에 예탁한다.

④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제5조에 따른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실태 조사
2.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지하수보전구역의 운영
4.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
5. 제16조의3에 따른 오염지하수의 정화작업
6. 제17조에 따른 보조측정망의 설치·운영
7. 제2항제4호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
8. 제3항에 따른 이행보증금 예탁금의 상환
9. 제33조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의 보전
10.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관리시책 사업의 추진
11. 그 밖에 지하수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⑤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만 보고하여야 한다

2) 「김포시 지하수 조례」 제14조(세입)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경기도 보조금
2.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 이용부담금
3.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6.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된 이행보증금
7.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의한 과태료

설치, 세입 및 세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지하수이용부담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는 재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현행법상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지하수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자원 확충을 도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재원을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 6788-5533